

제2장 입소자 관리

제5조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입소정원: 대치노인요양센터(1-11680-00127) : 8명

2.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나.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다.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 (2) 홈페이지, 검색광고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기관 홍보
- (3) 인쇄매체, 옥외광고도구 등을 통한 홍보
- (4) 상담 - 전화, 내방 상담

제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별첨)

가.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을 적용하고, 본 시설의 기타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별첨에 명기함).

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입소자(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비급여항목 : 식비, 간식비, 약재비, 기타 비용 실비 부담

마. 별첨 : 월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

바. 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 카드납부나 현금납부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

2025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대상자(20%)

1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2,029,440	1,623,560	405,880	252,000	72,480	657,880
29일	2,101,920	1,681,540	420,380	261,000		681,380
30일	2,174,400	1,739,520	434,880	270,000		704,880
31일	2,246,880	1,797,510	449,370	279,000		728,370

2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1,883,000	1,506,400	376,600	252,000	67,250	628,600
29일	1,950,250	1,560,200	390,050	261,000		651,050
30일	2,017,500	1,614,000	403,500	270,000		673,500
31일	2,084,750	1,667,800	416,950	279,000		695,950

3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1,736,000	1,388,800	347,200	252,000	62,000	599,200
29일	1,798,000	1,438,400	359,600	261,000		620,600
30일	1,860,000	1,488,000	372,000	270,000		642,000
31일	1,922,000	1,537,600	384,400	279,000		663,400

본인부담금 60%경감자(8%)

1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2,029,440	1,867,090	162,350	252,000	72,480	414,350
29일	2,101,920	1,933,770	168,150	261,000		429,150
30일	2,174,400	2,000,450	173,950	270,000		443,950
31일	2,246,880	2,067,130	179,750	279,000		458,750

2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1,883,000	1,732,360	150,640	252,000	67,250	402,640
29일	1,950,250	1,794,230	156,020	261,000		417,020
30일	2,017,500	1,856,100	161,400	270,000		431,400
31일	2,084,750	1,917,970	166,780	279,000		445,780

3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1,736,000	1,597,120	138,880	252,000	62,000	390,880
29일	1,798,000	1,654,160	143,840	261,000		404,840
30일	1,860,000	1,711,200	148,800	270,000		418,800
31일	1,922,000	1,768,240	153,760	279,000		432,760

본인부담금 40%경감자(12%)

1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2,029,440	1,785,910	243,530	252,000	72,480	495,530
29일	2,101,920	1,849,690	252,230	261,000		513,230
30일	2,174,400	1,913,480	260,920	270,000		530,920
31일	2,246,880	1,977,260	269,620	279,000		548,620

2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1,883,000	1,657,040	225,960	252,000	67,250	477,960
29일	1,950,250	1,716,220	234,030	261,000		495,030
30일	2,017,500	1,775,400	242,100	270,000		512,100
31일	2,084,750	1,834,580	250,170	279,000		529,170

3등급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3,000x3)	1일당	입소비
28일	1,736,000	1,527,680	208,320	252,000	62,000	460,320
29일	1,798,000	1,582,240	215,760	261,000		476,760
30일	1,860,000	1,636,800	223,200	270,000		493,200
31일	1,922,000	1,691,360	230,640	279,000		509,64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준함

4. 신원인수인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 해제 및 퇴소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10일 이상 입원 시 자동 퇴소)의 경우

나. 문제행동 또는 전염성질환으로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서비스제공의 불만족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전원,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자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변경 시 노인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2. 입소자의 이용료 중 비급여에 대한 변경은 보호자에게 인상 금액 및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라.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가. 서비스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제9조 (특별한 보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호스피스, 심각한 행동장애 등)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약물치료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가 사료되는 경우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입원을 시키거나 시설사정에 따라 특별침실을 사용한다.
2.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시설 내 특별침실을 사용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제10조 (의료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축탁의 및 일반의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응급상황의 경우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의 한 뒤 연계되어 있는 협력 병원, 또는 입소계약서 작성 시 지정한 병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3.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병원진료)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본 시설의 직원이 동행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4.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외박 수가를 적용한다.

제1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입소자는 시설물 및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2. 입소자의 과실 또는 단독행위,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3. 본 시설은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3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정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추가, 삭제 등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소정에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은 노인복지법 및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준한다.